

검 토 보 고 서

1.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2.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2011. 6. 30)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명 금 길]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년 6월 10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2011년 6월 13일

4. 근거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12조(법률 제10739호)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대통령령 제22699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창의롭고 활기찬 조직을 목표로 기능직 및 실무직의 승진적체를 해소하여 하위직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렬·직급별 정원의 조정을 통한 승진을 실시하여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 and 공정한 보상으로 역동적인 조직을 구현하고자 제출된 것임

<주요내용>

- (1) 마포구의 총 정원은 정무직 1명을 포함하여 1,260명으로 일반직 76%이상 977명 기능직 22%이내 267명, 별정직 2% 이내 15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음
- (2) 안 별표 2종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에서는 6급 현행 21% 이내를 22% 이내로 1%를 상향 조정하고 현행 8급 31% 이내 와 9급 9% 이상을 각 각 0.5%를 하향 조정하여 하위직급을 축소하고 상위직급을 증원
- (3) 안 별표 2종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에서는 현행 7급 11% 이내를 17% 이내로 6%를, 현행 8급 31% 이내를 35% 이내로 4%를 각 각 상향 조정하였고 현행 10급은 22% 이상을 12% 이상으로 10%를 하향 조정하여 하위직급을 축소하고 상위직급을 증원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승진적체로 침체되고 소외된 하위직급의 사기 증진과 열심히 일한만큼 공정하게 보상하는 체계 확립을 위한 2011년도 마포구 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구청장방침에 따라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음

다만 기능직 또는 별정직 중에는 해당직급 장기근무자가 많이 있어 승진적체에 따른 불안과 사기저하가 예상됨으로 금번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더욱 더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직급의 장기 근속자에 해당되나 상위직급의 정원이 없어 승진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직렬별, 직급별 정원에 대한 균형적인 안배가 필요하다고 사료됨